

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2월 24일

발 의 자 : 이 병 주의원(대표발의)

조희선, 이윤정, 김정호

1. 구 분 : 부분개정

2. 개정이유

-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를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(안 제23조제11항)

4. 개정조례안 : 불 임

5. 입법예고 : 의원발의(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)

6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7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8. 참고사항 : 경기도내 타 시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

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⑪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일수는 재직기간 10년마다 5일로 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
제2조(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23조제11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얻은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.

발 의	이병주 의원 대표발의 (외 3 인)
소 관	자치행정과
입 안	이병주 의원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특별휴가) ①~⑩ 생략 ⑪ <u>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장기재직 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.</u>	제23조(특별휴가) ①~⑩ (현행과 같음) ⑪ <u>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장기재직 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일수는 재직기간 10년마다 5일로 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.</u>

【참고자료】

경기도내 타 시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

- 장기재직 휴가 실시중인 시(도) : 20개 시(1 도)
(5일 : 8개, 5일 이상 20일 이하 : 1개, 10일 이상 : 12개)
- 타 시 실시 현황

구 분	재직기간(년수)	휴가일수	비 고
경기도	20이상	10	
성남시	10~19 20~29 30이상	10 20 20	
고양시	20이상	5	
용인시	10~19 20이상	10 10	
부천시	10~19 20~29 30이상	10 15 20	
안산시	20이상	5	
안양시	10~19 20~29 30이상	5 10 20	
화성시	20이상	10	
의정부시	20이상	10	
시흥시	20이상	10	
광명시	20이상	5	
김포시	20이상	10	
군포시	20이상	10	
광주시	20이상	10	
양주시	20이상	5	
오산시	20이상	10	
구리시	20이상	5	
포천시	20이상	5	
의왕시	20이상	10	
하남시	20이상	5	
동두천시	20이상	5	

※ 미 실시 : 수원시, 남양주시, 파주시, 평택시, 안성시, 이천시, 과천시, 여주시, 가평군, 양평군, 연천군